

해고 및 퇴직



○해고란

사용자의 의지로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것을「해고」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즉시 노동기준감독서나 노동관계의 상담창구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노동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 일 이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예고 수당으로서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고용기간이 정해진 노동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기간 도중에 노동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0 일이상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예고수당의 지급이 필요합니다.

(3) 해고에 불만이 있는 경우

해고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불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퇴직증명서를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아 계약종료사유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해고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유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센터나 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기준법위반인 해고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노동자의 퇴직신청이나 퇴직원의 제출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인을 하면 합의계약에 따라 노동관계는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없이 고용된 사람은 사용자가 퇴직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2 주가 지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노동자가 고용계약의 해약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을 승낙한 다음에 노동자가 퇴직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 신청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퇴직할 경우 노동자는 청구하면 7 일 이내에 미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 저금 등 자기 권리에 속한 금품이 있을 경우에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기일까지 사원증이나 대여된 유니폼, 건강보험증 등을 사용자측에 반환해야합니다.

문의처 효고노동국 감독과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대응언어:중국어) 0570-001-702

 히메지노동기준감독서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대응언어:베트남어) 079-224-8181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검색(다국어 대응)

<https://www.check-roudou.mhlw.go.jp/soudan/foreigner.html>

니시노미야노동기준감독서 0798-26-3733

※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